

V. 결 어

인터넷매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는 인터넷 자체의 성장이나 발달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도나 전달을 자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인터넷매체가 옹당향유하여야 할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규제·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비록 언론중재법이 규율하는 언론조정중재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가 그 자체로서는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인터넷매체의 방어권과 공정한 조정이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 명실상부하게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본다.